

스위스 연방헌법(하)1)  
(제94조부터 제195조까지)

목차

**제3편 연방(Confédération), 주(cantons), 시(communes)**

제2장 권한

제7절 경제(제94조~제107조)

제8절 주택, 근로, 사회보장 및 보건(제108조~제120조)

제9절 외국인의 체류 및 영주(제121조~제121a조)

제10절 민법, 형법 및 양형(제122조~제125조)

제3장 재정 제도(제126조~제135조)

**제4편 국민과 주(Peuple et cantons)**

제1장 일반규정(제136조~제137조)

제2장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제138조~제142조)

**제5편 연방기관(Autorités fédérales)**

제1장 일반규정(제143조~제147조)

제2장 연방의회

제1절 조직(제148조~제155조)

제2절 절차(제156조~제162조)

제3절 권한(제163조~제173조)

제3장 연방내각 및 연방행정

제1절 조직 및 절차(제174조~제179조)

제2절 권한(제180조~제187조)

제4장 연방대법원 및 기타 사법기관(제188조~제191c조)

**제6편 연방헌법 개정 및 경과규정(Révision de la Constitution et**

1) 2018. 9. 23. 개정된 것. 스위스 연방헌법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및 레토로망어(romanche)로 각각 작성되었으며, 본 번역문은 프랑스어로 작성된 스위스 연방헌법을 번역한 것임. 전문부터 제93조까지의 내용은 2020. 2. 뉴스레터 제41호 참조.

**dispositions transitoires)**

제1장 개정(제192조~제195조)

제2장 경과규정(제196조~제197조: 생략)

**제3편 연방, 주, 시**

**제2장 권한**

**제7절 경제**

**제94조 (경제질서의 원칙)**

- ① 연방 및 주는 자유경제의 원칙을 준수한다.
- ② 연방 및 주는 스위스 경제의 이익을 보호하고, 민간경제와 협력하며, 국민의 번영과 경제적인 안정에 기여한다.
- ③ 연방 및 주는 각각의 권한 범위 내에서 민간부문 경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 ④ 자유경제의 원칙에 대한 예외나 경쟁에 반하는 조치들은 이를 연방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주의 특권에 의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95조(민간부문에서의 영리활동)**

- ① 연방은 민간부문에서의 영리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연방은 스위스의 단일한 경제권 조성에 노력한다. 연방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국립, 주립, 주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스위스 전역에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③ 경제, 사유재산 및 주주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지배구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은 스위스 및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스위스 주식회사들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제한다.
  - a. 주주총회가 이사회, 집행임원 및 자문위원회에 대한 총보수(금전 및 기타 이익)를 연단위로 의결한다. 주주총회는 이사회 의장, 이사회 및 보수위원회 위원, 독립적 대리인을 연단위로 선출한다. 연금기금은 그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행사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주주는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경영진 또는 예탁은행은 주주를 대리할 수 없다.

b. 경영진에게는 퇴직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 선급금, 기업 매수 및 매각에 대한 보너스를 제공하거나 그룹 내 다른 회사의 자문인 또는 근로자로 되는 추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법인은 회사의 경영진이 될 수 없다.

c. 경영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거래, 대부 및 연금, 이익분배 및 지분참여계획, 그룹 외부에서 맡을 수 있는 직책의 수, 집행위원회 위원 고용계약의 존속기간을 정관으로 정한다.

d. 제a호부터 제c호까지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연간보수의 6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6조(경쟁 정책)**

① 연방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기업 담합 및 기타 형태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다음의 조치를 강구한다.

a. 사법·공법상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이나 조직에 의하여 불공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한다.

b. 불공정경쟁을 근절한다.

#### **제97조(소비자 보호)**

① 연방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한다.

② 연방은 소비자단체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소비자단체는 불공정경쟁에 관한 연방법제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직업단체 및 경제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주는 일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대하여 조정절차 또는 간이하고 신속한 재판 절차를 정한다. 연방내각은 그 한도액을 정한다.

### 제98조(은행 및 보험)

- ① 연방은 주립은행의 특수한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은행 및 증권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② 연방은 그 밖의 금융 업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연방은 사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제99조(통화 정책)

- ① 금융 및 통화는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화폐를 주조하고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연방만이 가진다.
- ② 스위스국립은행은 독립적인 중앙은행(banque centrale indépendante)으로서, 국가의 전체이익에 이바지하는 통화 정책을 수행한다. 스위스국립은행은 연방의 협조와 감독 하에 운영된다.
- ③ 스위스국립은행은 그 수입으로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되, 그 일부는 금으로 확보한다.
- ④ 스위스국립은행의 순수입 중 최소한 3분의 2를 주에 귀속한다.

### 제100조(경제 정책)

- ① 연방은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실업 및 물가인상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② 연방은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발전을 고려한다. 연방은 주 및 산업계와 공조한다.
- ③ 연방은 통화, 신용, 통상 및 공적금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연방, 주 및 자치단체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그 예산정책을 정한다.
- ⑤ 연방은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연방법률의 소관에 해당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할증이나 할인을 단행할 수 있다. 징수된 기금은 동결

시켜야 하며, 동결 조치의 해제 후 직접세는 개인별로 환급하고, 간접세는 할인 또는 고용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⑥ 연방은 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을 위한 준비금의 적립을 의무화할 수 있다. 연방은 이를 위하여 조세경감조치를 취할 수 있고, 주도 연방과 동등한 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의무가 해제되면 해당 기업은 법률에서 정하는 배분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그 용도를 정한다.

### **제101조(대외경제 정책)**

- ① 연방은 대외적으로 스위스 경제의 이익을 보호한다.
- ② 연방은 특별한 경우에 스위스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연방은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제102조(국가물자 공급)**

- ① 연방은 전쟁의 위협이나 무력행사 또는 경제의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 및 용역의 조달을 확보한다. 연방은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 ② 연방은 필요한 경우에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제103조(구조 정책)**

연방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지역 간의 상호지원조치가 그 지역의 존립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 직업부문을 촉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연방은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제104조(농업)**

- ① 연방은 농업이 지속가능하고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생산을 통하여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보장한다.

- a.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 공급
  - b. 천연자원의 보존 및 향토경관의 유지
  - c. 지역 분산적인 인구분포
- ② 연방은 농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호지원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나 농민의 토지 경작을 장려한다.
- ③ 연방은 농업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연방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 a. 연방은 농민이 환경보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농업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한다.
  - b. 연방은 경제적 유인책을 통하여 특히 자연친화적이고 환경과 동물을 존중하는 개발 형태를 장려한다.
  - c. 연방은 식료품의 원산지, 품질, 제조 방법 및 가공 공정의 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d. 연방은 비료, 화학물질 및 기타 첨가물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를 예방한다.
  - e. 연방은 농업의 연구, 지도 및 교육을 장려하고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 f. 연방은 농촌지역의 토지소유를 안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연방은 이를 위하여 특별 배정된 농업 예산 및 연방의 일반 재원을 투자한다.

#### **제104a조(식량안보)**

국민에 대한 식량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방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a. 농업, 특히 농토의 보호
- b.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식량 생산
- c. 시장수요에 맞는 농업과 식량 분야

- d. 농업과 식량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부합하는 무역
- e.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식량 활용

### 제105조(주류)

주류의 제조, 수입, 정제 및 판매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연방은 주류의 소비로 야기되는 유해한 결과를 고려한다.

### 제106조(사행 행위)

- ① 사행성 도박 및 복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 ②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방은 그 허가를 할 때에 지역적 현실 및 사행성 도박이 야기하는 위험을 고려한다. 연방은 도박장에 수입 관련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은 도박으로 인한 총수입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세금은 노령, 유족 및 장애 보험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주는 다음의 면허 및 감독을 담당한다.
  - a. 인원수의 제한이 없고,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동일한 임의의 추첨 또는 유사한 절차에 기초한 도박활동. 상기 내용은 카지노 내의 잭팟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b. 스포츠 관련 내기
  - c. 기량게임
- ④ 제2항 및 제3항은 온라인 도박에도 적용된다.
- ⑤ 연방 및 주는 도박의 위험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입법 및 감독조치를 통하여 적절한 보호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게임의 상이한 특성 및 도박기회의 형태와 장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주는 제3항 제a호 및 제b호에 따른 도박의 순수익이 자선목적, 특히 문화, 사회 프로젝트 및 스포츠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연방 및 주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연방의 행정기구와 주의 행정기구 인력으로 각각 50퍼센트씩 구성되는 공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7조(무기 및 군수물자)**

- ① 연방은 무기, 무기부속품 및 탄약류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 ② 연방은 군수물자의 제조, 조달과 판매, 수입 및 통과수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제8절 주택, 근로, 사회보장 및 보건**

#### **제108조(주택 건설 및 주택 소유의 촉진)**

- ① 연방은 개인적 용도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건설, 공익목적의 주택건설을 위한 발주자 및 단체의 활동을 촉진한다.
- ② 연방은 주택건설, 건설의 합리화 증대, 건설비용의 인하 및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 개발을 장려한다.
- ③ 연방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의 개발 및 건설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연방은 법률 제정에 있어서 가족,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의 이익을 고려한다.

#### **제109조 (임대차)**

- ① 연방은 임대차의 악용, 특히 과도한 임대료의 근절, 계약파기 남용의 방지 및 임대차 기간의 제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② 연방은 임대차계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이익, 지역의 특수성 및 법적 평등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제110조 (근로)

- ①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a. 근로자의 보호
  - b.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특히 경영 및 직업 분야에 관련된 공통 규율
  - c. 취업알선
  - d.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선언
- ② 단체협약은 소수자의 이익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법적 평등성 및 조합결성의 자유를 준수하는 경우에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선언될 수 있다.
- ③ 8월 1일은 스위스 연방 국경일이다. 이 날은 근로법상 일요일에 준하며, 유급으로 한다.

### 제111조 (노령·유족·장애 연금)

- ① 연방은 노령·유족·장애에 대한 연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강구한다. 이 연금은 노령·유족·장애 연방보험, 직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3대 보장으로 이루어진다.
- ② 연방은 노령·유족·장애 연방보험과 직업연금이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③ 연방은 주에 대하여 노령·유족·장애 연방보험과 직업연금 유관기관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가입자, 가입자의 고용주가 납부하는 분담금 및 연금수급권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강제할 수 있다.
- ④ 연방은 주와 협력하며, 세금 관련 조치 및 재산 취득 장려정책을 통하여 개인연금을 장려한다.

### 제112조 (노령·유족·장애 보험)

- ① 연방은 노령·유족·장애 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② 연방은 법률의 제정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고려한다.

a. 보험은 의무적이다.

a의2. 연방은 급부를 현금 및 현물로 지급한다.

b. 연금은 최저생계비를 적절히 충족시킨다.

c. 연금의 최고액은 최소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d. 연금은 최소한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③ 보험의 재원은 다음에 의하여 조달된다.

a. 가입자의 부담금. 가입자가 봉급생활자인 경우에 고용주가 그 부담금의 절반을 부담한다.

b. 연방의 부담금

④ 연방의 부담금은 지출액의 절반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⑤ 연방의 부담금은 우선적으로 담배, 증류주, 도박장에 대한 세금의 순수익으로 조달한다.

⑥ [삭제]

#### **제112a조 (추가 부담금)**

① 연방 및 주는 노령·유족·장애 보험이 기초생활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추가 부담금을 지급한다.

② 추가 부담금의 범위, 연방과 주의 임무와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 **제112b조 (장애인의 사회통합 장려)**

① 연방은 현금 및 현물 지급을 통하여 장애인의 통합을 장려한다. 연방은 이를 위하여 장애 보험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 및 일자리 제공 담당기관을 조직 및 운영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의 통합을 장려한다.

③ 장애인 통합의 목적, 원칙 및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 **제112c조 (노인 및 장애인 지원)**

- ① 주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지원 및 재가용역을 제공한다.
- ② 연방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연방은 이 목적을 위하여 노령·유족·장애 보험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13조 (직업연금)

- ① 연방은 직업연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② 연방은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을 존중한다.
  - a. 직업연금은 노령·유족·장애 보험과 병행하여 그 가입자가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b. 근로자의 직업연금 가입은 의무이다. 법률은 그 예외를 정할 수 있다.
  - c.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연금기관에 가입시킨다. 이를 위하여 연방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연방 연금기관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d. 자영업자는 임의로 연금기관에 가입할 수 있다.
  - e. 연방은 특정 범주의 자영업자에 대하여 일반적 또는 개별적 위험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직업연금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③ 직업연금은 가입자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사용자가 최소한 분담금의 절반을 부담한다.
- ④ 연금기관은 연방법률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연방은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위스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조치를 정할 수 있다.

### 제114조 (실업보험)

- ① 연방은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② 연방은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을 존중한다.
  - a. 보험은 소득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고, 실업의 방지 및 극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b. 근로자의 실업보험의 가입은 의무이다. 법률은 그 예외를 정할 수 있다.

c. 자영업자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실업보험은 가입자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사용자가 부담금의 절반을 부담한다.

④ 연방 및 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⑤ 연방은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115조 (빈곤자 구호)**

빈곤자는 그 거주지 주에 의하여 구호를 받는다. 연방은 그 예외와 권한을 규율한다.

#### **제116조 (가족수당 및 출산보험)**

① 연방은 그 사무의 수행에 있어서 가족이 필요로 하는 바를 고려한다. 연방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연방은 가족수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족수당 관련 연방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연방은 출산보험을 설립한다. 연방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도 부담금 납부를 의무화할 수 있다.

④ 연방은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범위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가족수당기금 및 출산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고, 연방의 부담금은 주의 부담금에 상응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제117조 (의료보험 및 재해보험)**

① 연방은 의료보험 및 재해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일반 국민 또는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국민에 대하여 의료보험 및 재해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다.

#### **제117a조 (1차 의료)**

① 연방과 주는 각 권한범위 내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1차 의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한다. 연방과 주는 가정의학을 1차 의료의 필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양성하여야 한다.

② 연방은 다음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한다.

- a. 가정의학 직종에 대한 기본 및 평생 교육과 훈련, 해당 직종의 개업 요건
- b. 가정의학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수

### 제118조 (보건)

① 연방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한다.

- a. 식료품, 치료제, 마약, 유기체, 화학물질 및 건강에 유해한 물질의 이용
- b. 인간 및 동물에 전염되고, 유행되며, 위험한 질병의 극복
- c. 이온화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

### 제118a조 (대체의료)

연방 및 주는 각 권한범위 내에서 대체의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118b조 (인체에 대한 연구)

① 연방은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인체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입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수행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고, 보건과 사회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연방은 인체에 관한 생물학적 및 의학적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a. 연구 프로젝트는 참가자 또는 그 법적 대리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외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동의에 대한 거부는 모든 경우에 구속력을 가진다.
- b. 참가자의 위험과 스트레스는 연구 프로젝트의 혜택과 비례적이어야 한다.

- c. 동의능력이 없는 자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는 동의능력 있는 자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그 프로젝트와 같은 가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연구 프로젝트가 동의능력 없는 자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위험성과 스트레스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 d. 연구 프로젝트에 대하여 참가자의 안전이 보장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독립적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9조 (인체에 대한 생체의학 및 유전공학)

- ① 인체는 생체의학 및 유전공학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② 연방은 인체 및 유전형질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연방은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인격 및 가족을 보호하고, 다음의 사항을 존중한다.
  - a. 모든 형태의 복제 및 인간의 생식세포, 배아의 유전형질에의 개입은 금지된다.
  - b. 인체 이외의 생식형질 및 유전형질은 인체의 생식형질에 전이되거나 이식되지 못한다.
  - c. 시험관 수정은 불임 또는 중대한 질병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태아의 특정한 자질의 계발이나 연구의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여성의 체외수정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한하여 허용된다. 체외수정은 여성의 체내에 즉시 이식할 수 있는 수의 난자만 배아의 단계까지 배양할 수 있다.
  - d. 배아의 증여 및 기타 어떠한 형태의 대리출산도 금지된다.
  - e. 인체의 생식형질이나 배아로부터 생기는 어떠한 물질도 거래되어서는 아니 된다.
  - f. 인체의 유전형질은 본인의 동의에 의하거나 법률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분석, 등록 및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g. 모든 사람은 자신의 혈통에 관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 제119a조 (장기이식)

- ① 연방은 장기, 조직 및 세포의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연방은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인격 및 건강의 보호를 보장한다.
- ② 연방은 장기이식 기회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기준을 정한다.
- ③ 인간의 장기, 조직 및 세포의 기증은 무상이다. 장기의 거래는 금지된다.

### 제120조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유전공학)

- ① 인간 및 그 환경은 유전공학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② 연방은 동물, 식물 및 기타 유기체의 생식형질 및 유전형질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연방은 인간, 동물 및 환경의 안전을 존중하고 동·식물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한다.

## 제9절 외국인의 체류 및 영주

### 제121조 (외국인 및 망명 관련 입법)

- ① 외국인의 스위스 출입국, 체류, 영주 및 난민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 ②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외국인은 스위스에서 추방될 수 있다.
- ③ 외국인은 그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 스위스 거주권 및 기타 모든 법적 체류권을 상실한다.
  - a. 살인, 강간 또는 기타 중대한 성범죄, 기타 강도, 인신매매, 마약거래 또는 주거침입절도 등 폭력범죄로 유효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 b. 사회보험 및 사회보조혜택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 ④ 입법부는 제3항의 범죄를 상세히 정의하여야 하며, 다른 범죄를 추가할 수 있다.
- ⑤ 관할 당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스위스 거주권 및 기타 법적 체류권

을 상실한 외국인을 스위스에서 추방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외국인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재범의 경우, 입국금지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⑥ 입국금지를 위반하거나 기타 스위스에 위법하게 입국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 입법부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1a조 (이민 통제)**

① 스위스는 외국인의 이민을 자율적으로 통제한다.

② 외국인의 스위스 체류 허가 건 수는 연간 수량제한 및 할당량에 따라 제한된다. 수량제한은 망명 관련 허가를 포함해, 외국인 관련 입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든 허가에 적용된다. 영구체류, 가족재결합 및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도 제한될 수 있다.

③ 유급 고용된 외국인에 대한 연간 정원 제한 및 할당량은 스위스 전반적 경제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스위스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해당 제한 및 할당량에는 국외 통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체류 허가의 결정적 기준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신청, 융합 능력, 충분하고 독립적인 생계수단이다.

④ 이 조에 위배되는 국제협약은 체결할 수 없다.

⑤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절 민법, 형법 및 양형**

### **제122조 (민법)**

① 민사 및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② 민사에 관한 법원의 조직 및 행정은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의 권한에 속한다.

### **제123조 (형법)**



- ① 형사 및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 ② 형사에 관한 법원의 조직 및 행정, 형벌과 처분의 집행은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의 권한에 속한다.
- ③ 연방은 형벌과 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연방은 주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a. 교정시설의 설립
  - b. 형벌과 처분의 집행 개선
  - c. 아동, 청소년 및 미성년을 위한 교정시설의 지원

**제123a조 (특히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교정수단)**

- ① 성범죄 또는 폭력행위 범죄자에 대한 재판상 요구되는 정신감정에서 동 범죄자가 극히 위험하고 교화의 여지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종신구금형에 처한다. 일체의 가석방 및 외출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 ② 과학적인 새로운 사실에 입각하여 범죄자가 교화가능성이 있고 더 이상 사회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아니한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감정을 실시한다. 이 재감정에 따라 종신형을 취소한 당국은 해당 범죄자가 재범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성범죄 또는 폭력행위 범죄자에 대한 감정은 최소 2인의 독립적인 조사관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 일체를 감안하여 실시한다.

**제123b조 (청소년 관련 성범죄 또는 외설물 범죄에 대한 공소권 및 처벌 권 시효 없음)**

청소년 관련 성범죄 또는 외설물 범죄에 대한 공소권 및 처벌권은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23c조 (아동 또는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성범죄 관**

## 련 조치)

아동 또는 의존성이 높은 사람의 성적 무결성을 침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미성년자 또는 의존성이 높은 사람과 관련된 직업이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영구히 박탈당한다.

## 제124조 (피해자 지원)

연방 및 주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성적인 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정적 곤란에 처한 경우에 구조 및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125조 (양형)

양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 제3장 재정 제도

### 제126조 (연방재정)

- ① 연방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 ② 예산으로 승인되는 총지출 상한액은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추계 수입에 따라 정해야 한다.
- ③ 예외적인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상한액을 인상할 수 있다. 연방의회는 제159조 제3항 제c호에 의거하여 상한액의 인상을 결정한다.
- ④ 국가회계상 총지출이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지출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보전하여야 한다.
- ⑤ 법률은 재정유지를 위한 세부방식을 정한다.

### 제127조 (조세원칙)

- ① 조세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납세자의 범위, 조세의 대상 및 그 금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각 조세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보편성, 균등성 및 경제적 부담능력에 상응한 조세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③ 주에 의한 이중과세는 금지된다. 연방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제128조 (직접세)

① 연방은 다음 사항과 같이 직접세를 징수할 수 있다.

a. 자연인의 소득에 대하여 최대 11.5 퍼센트

b. 법인의 순수익에 대하여 최대 8.5 퍼센트

c. [삭제]

② 연방은 세율을 확정하는데 있어, 주 및 자치단체의 직접세에 의한 부담을 고려한다.

③ 자연인의 소득에 대한 과표구간에 따른 누진세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하여서는 정기적으로 상계되어야 한다.

④ 주는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한다. 조세의 총수입 가운데 최소한 17 퍼센트는 주에 귀속한다. 다만, 주 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귀속분이 15 퍼센트까지 축소될 수 있다.

### 제129조 (조세 조화)

① 연방은 연방, 주 및 자치단체 간에 직접세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원칙을 정하고, 주에 의한 조화의 노력을 고려한다.

② 조세의 조화는 납세의 의무, 과세 대상, 과세 기간 및 조세에 관한 절차와 형법을 포괄한다. 과세표, 세율 및 면세범위는 조세 조화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연방은 부당한 세제혜택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30조 (부가가치세)

- ① 연방은 재화의 인도, 연방에 대한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제공 및 수입에 대해 통상적으로 최대 6.5 퍼센트, 최소 2.0 퍼센트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법률은 숙박용역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보다 낮은 세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율은 정상세율보다 낮고 할인세율보다 높다.
- ③ 연령 피라미드의 추이에 따라 노령·유족·장애 보험의 재정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방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정상세율을 최대 1 퍼센트, 할인세율은 최대 0.3 퍼센트 인상할 수 있다.
- ③의2 철도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0.1 퍼센트의 세율을 가산한다.
- ④ 사용 목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세금수입의 5 퍼센트는 법률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용도로 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저소득층의 의료보험료 인하에 사용한다.

### 제131조 (특별소비세)

- ① 연방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다.
  - a. 생담배 및 제조담배
  - b. 증류주
  - c. 맥주
  - d. 자동차 및 그 부품
  - e. 석유, 기타 광물, 천연가스 및 그 정제품과 연료
- ② 연방은 또한 다음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 a. 항공연료를 제외한 원동기연료 소비세에 대한 부가세
  - b. 제1항 e에 의거하여 원동기 자동차가 원동기연료 외 다른 연료로 작동하는 경우의 세금
- ②의2 항공교통에 관하여 제87b조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연방은 항공연료 소비세에 대한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증류주에 부과된 조세로부터 얻어지는 순수입의 10 퍼센트는 주에 귀속

된다. 주는 이 기금을 알코올중독의 방지 및 치유에 사용한다.

### 제132조 (인지세 및 원천징수세)

① 연방은 유가증권, 보험료납입영수증 및 기타 상거래의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증서 및 토지저당증서는 인지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연방은 동산자본소득, 복권당첨금 및 보험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 수입의 10 퍼센트는 주에 귀속된다.

### 제133조 (관세)

관세 및 국경에서의 상품유통에 관련하여 징수하는 세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 제134조 (주 및 자치단체에 의한 과세 배제)

연방법제에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및 원천징수세의 대상 또는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주 및 자치단체는 이와 동일한 종류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제135조 (재원균등화 및 부담분 상계)

① 연방은 연방과 주, 그리고 주 간의 재원균등화 및 적절한 부담분 상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재원균등화 및 부담분 상계의 목적은 다음 사항과 같다.

- a. 주 간의 재정능력 편차 축소
- b. 주에 대한 최소한의 재원 분배 보장
- c. 지리학적 또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주의 과도한 부담분 상계
- d. 부담분 상계를 수반하는 주 간의 협력 촉진
- e. 주의 국가적·국제적 세금경쟁력 유지

③ 재원균등화를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와 연방이 자금을 조달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의 분배분은 연방 분배분의 최소 3분의 2, 최대 80 퍼센트에 상응한다.

## 제4편 국민과 주

### 제1장 일반규정

#### 제136조 (참정권)

- ① 만 18세 이상의 모든 스위스인은 정신질환 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행위 능력이 없지 아니하는 한, 연방 문제에 있어서 참정권을 가진다. 참정권을 가진 스위스 시민 모두는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모든 스위스인은 국민의회 선거 및 연방투표에 참여하고, 연방에 대하여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요구를 발의·서명할 수 있다.

#### 제137조 (정당)

정당은 국민의 의견과 의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 제2장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 제138조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 ① 투표권을 가진 10만의 국민은 그 발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18개월 내에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위 발안은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 제139조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 ① 투표권을 가진 10만의 국민은 그 발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18개월 내에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위한 국민발안은 일반적 방식의 개정안 또는 초안의 형식을 가질 수 있다.

③ 국민발안이 형식의 통일성이나 내용의 통일성이 결여되거나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위배되는 경우, 연방의회는 이에 대해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를 선언한다.

④ 연방의회에서 일반적 발안을 승인하는 경우, 연방의회는 해당 국민발안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투표 및 주투표에 회부한다. 연방의회가 국민발안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연방의회는 해당 국민발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국민투표로써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투표에서 승인되는 경우에 연방의회는 국민발안에서 요구된 헌법안을 작성한다.

⑤ 초안 형식의 발안은 국민투표와 주투표에 회부하여야 한다. 연방의회는 그 발안의 가부를 권고하여야 하고, 그 발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39a조 (삭제)**

#### **제139b조 (국민발안 및 대안에 관한 절차)**

① 투표권을 가진 국민은 발안과 대안에 대하여 동시에 투표한다.

② 국민은 국민발안 및 대안 모두에 찬성투표를 할 수 있다. 국민은 두 개의 안이 모두 채택되는 경우, 세 번째 문항으로 어느 안을 우선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표명할 수 있다.

③ 세 번째 문항에 의하여 헌법 개정과 관련된 두 개의 안 가운데, 한 개의 안이 국민의 과반수를 득표하고 다른 안이 주의 과반수를 득표하는 경우, 과반수를 득표한 양 안 가운데 더 높은 득표율을 차지한 안이 발효된다.

#### **제140조 (필요적 국민투표)**

① 다음 사항은 국민투표 및 주투표에 회부한다.

a. 연방헌법의 개정

b. 집단적 안전보장기구 또는 초국가적 공동체에의 가입

c. 헌법상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긴급성이 선언된 연방법률이 1년을 초과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법률은 연방의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② 다음 사항은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a.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a의2. [삭제]

b. 연방의회에 의하여 부결된 일반적 발안의 형식으로 행해진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c. 양 의회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방헌법 전면개정의 여부

#### 제141조 (임의적 국민투표)

① 투표권을 가진 5만의 국민 또는 8개 주가 그 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a. 연방법률

b.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긴급성이 선언된 연방법률

c. 헌법 또는 법률에서 정한 연방명령

d.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국제조약

1. 유효기간이 한정되지 아니하고 폐기의 통고가 정해지지 아니한 조약

2. 국제기구에의 가입과 관련된 조약

3. 법률 사항을 정하는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시행에 연방법의 제정이 필요한 조약

② [삭제]

#### 제141a조 (국제조약의 시행)

① 국제조약의 비준에 관한 명령이 필요적 국민투표에 회부된 경우, 연방의회는 해당 조약의 시행과 관련한 헌법 개정을 그 국민투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국제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령이 임의적 국민투표에 회부된 경우, 연방의회는 해당 조약의 시행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그 국민투표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142조 (정족수)

① 국민투표에 회부된 안건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다.

② 국민투표 및 주투표에 회부된 안건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 및 주의 과반수 승인으로 채택된다.

③ 어느 한 주의 국민투표 결과는 해당 주의 결정이 된다.

④ Obwalden, Nidwalden, Basel-Stadt, Basel-Landschaft, Appenzell Ausserrhoden 및 Appenzell Innerrhoden 주는 각각 2분의 1의 주 표로 계산된다.

### 제5편 연방기관

#### 제1장 일반규정

#### 제143조 (피선거권)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국민의회, 연방내각 및 연방대법원에 선출될 자격을 가진다.

#### 제144조 (겸직금지)

① 국민의회 및 전주의회(全州議會)의 의원, 연방내각의 각료 및 연방대법원의 법관은 겸직이 금지된다.

② 연방내각의 각료 및 연방대법원의 상임법관은 연방 또는 주의 어떠한 관직에 취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어떠한 영리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타 겸직금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할 수 있다.

### 제145조 (임기)

국민의회의 의원, 연방내각의 각료 및 연방내각사무처의 처장은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연방대법원의 법관은 6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 제146조 (연방의 책임)

연방은 그 산하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부당하게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47조 (협의절차)

주, 정당 및 이해당사자는 중요한 국제조약, 입법 및 기타 중대한 의안의 준비과정에 있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2장 연방의회

### 제1절 조직

### 제148조 (지위)

- ① 연방의회는 국민 및 주의 권리의 유보 하에 연방의 최고기관이다.
- ② 연방의회는 동일한 권한을 가진 국민의회와 전주의회의 양 의회로 구성된다.

### 제149조 (국민의회의 구성 및 선거)

- ① 국민의회는 200인의 국민대표로 구성된다.
- ② 국민의회 의원은 비례대표 원칙에 따르며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한다.
- ③ 각 주는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한다.
- ④ 의석은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각 주는 최소한 하나의 의석을 가진다.

### 제150조 (전주의회의 구성 및 선거)

- ① 전주의회는 46인의 주대표로 구성된다.
- ② Obwalden, Nidwalden, Basel-Stadt, Basel-Landschaft, Appenzell, Ausserrhoden 및 Appenzell Innerrhoden 주는 각각 1인의 의원을 선출하고, 기타 주는 각각 2인의 의원을 선출한다.
- ③ 주는 전주의회 의원 선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 제151조 (회기)

- ① 양 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② 어느 한 의회의 4분의 1의 의원 또는 연방내각은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2조 (의장)

각 의회는 소속의원 중에서 의장 1인, 제1부의장 1인 및 제2부의장 1인을 각각 1년의 임기로 선출한다. 임기 다음 해에는 연임하지 못한다.

### 제153조 (의회위원회)

- ① 각 의회는 소속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합동위원회에 관하여 법률로 정할 수 있다.
- ③ 입법권을 제외한 일부 권한을 법률로써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수집, 문서열람 및 조사 권한을 가진다. 그 범위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제154조 (교섭단체)

연방의회의 의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55조 (의회사무처)

연방의회에는 의회사무처(Services du parlement)를 설치한다. 연방의회는 연방행정의 사무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2절 절차

### 제156조 (의회별 심의)

- ① 국민의회 및 전주의회는 각각 독립적으로 심의한다.
- ② 연방의회의 결정은 양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③ 양 의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 a. 국민발안의 유효 또는 일부 무효
  - b. 국민투표로 승인된 일반적 국민발안의 시행
  - c. 국민투표로 승인된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에 관한 연방명령의 시행
  - d. 예산 또는 추가예산

### 제157조 (합동심의)

- ① 국민의회 및 전주의회는 국민의회 의장의 주재 하에 다음 사항을 합동으로 심의한다.
  - a. 선거 관리
  - b. 연방의 최고기관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결정
  - c. 사면에 대한 결정
- ② 합동연방의회는 전항에 더하여 특별한 경우에 연방내각의 결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동심의를 실시한다.

### 제158조 (회의의 공개)

양 의회의 회의는 공개된다. 법률에 의하여 예외를 정할 수 있다.

### 제159조 (정족수 및 다수결)

- ① 양 의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② 각 의회의 개별적인 심의 또는 합동심의의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한다.
- ③ 다음 사항은 각 의회의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 a. 연방법률의 긴급성 선언
  - b. 1회의 신규지출이 2천만 프랑을 초과하거나 반복적으로 2백만 프랑 이상의 지출을 야기하는 보조금, 채무부담행위 및 지출상한에 관한 규정
  - c. 제12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재정수요의 증액
- ④ 연방의회는 물가상승에 따라 제3항 제b호의 금액을 법률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160조 (발의권 및 제안권)

- ① 연방의회의 모든 의원, 교섭단체, 위원회 및 주는 연방의회에 발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연방의회의 의원과 연방내각의 각료는 현안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제161조 (명령적 위임의 금지)

- ① 연방의회의 의원은 표결함에 있어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 ② 연방의회의 의원은 이익단체와의 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62조 (면책특권)

- ① 연방의회의 의원, 연방내각의 각료 및 연방내각사무처의 처장은 양 의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면책특권의 유형 및 대상자들에 대하여 법률로써 그 범위를 정할 수 있

다.

### 제3절 권한

#### 제163조 (연방의회 제정 입법의 형식)

- ① 연방의회는 연방법률(loi fédérale) 또는 법률명령(ordonnance)의 형식으로 법규범을 제정한다.
- ② 전항 이외의 법규범에 대하여는 연방명령(arrêté fédéral)의 형식으로 제정하되,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연방명령은 이를 단순연방명령(arrêté fédéral simple)이라 한다.

#### 제164조 (법률제정)

- ① 법규범을 정하는 모든 중요한 규정은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과 관련된 기본 규정들은 연방법률의 형식에 의하여 제정된다.
  - a. 참정권의 행사
  - b. 헌법적 권리의 제한
  - c. 개인의 권리와 의무
  - d. 납세자의 자격, 과세 대상 및 세액의 산정
  - e. 연방의 임무 및 사무
  - f. 연방법률의 시행 및 집행에 있어서 주의 의무
  - g. 연방기관의 조직 및 절차
- ② 법률제정의 권한은 연방헌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연방법률로써 위임할 수 있다.

#### 제165조 (긴급 법률제정)

- ① 시행의 연기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연방법률에 대하여 각 의회의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그 긴급성을 선언하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 해당 법률의 효력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긴급성이 선언된 연방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해당 연방법률은 연방의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민투표에서 승인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③ 긴급성이 선언된 연방법률이 헌법상의 근거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연방의회에 의하여 채택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민과 주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해당 법률의 효력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긴급성이 선언된 연방법률은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지 아니하면 이를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 **제166조 (외국과의 관계 및 국제조약)**

① 연방의회는 대외정책의 형성에 참여하고 외국과의 관계를 감독한다.

② 법률 또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연방내각이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연방의회가 국제조약을 승인한다.

#### **제167조 (재정)**

연방의회는 연방의 지출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한다.

#### **제168조 (선출)**

① 연방의회는 연방내각의 각료, 연방내각사무처의 처장, 연방대법원의 법관 및 군 장성을 선출한다.

② 연방의회는 법률에서 정한 경우 전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인사를 선출하거나 선출을 승인할 수 있다.

#### **제169조 (총괄적 감독)**

① 연방의회는 연방내각, 연방행정, 연방대법원 및 기타 연방의 사무를 위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감독을 행사한다.

②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위임을 받은 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감독을 거부할 수 없다.

#### 제170조 (효율성의 평가)

연방의회는 연방이 취한 조치들에 대한 효율성이 평가되도록 보장한다.

#### 제171조 (연방내각에의 위임)

연방의회는 연방내각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연방의회가 연방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은 법률로 정한다.

#### 제172조 (연방과 주의 관계)

- ① 연방의회는 연방과 주 간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 ② 연방의회는 주헌법을 보장한다.
- ③ 연방의회는 주 간의 협정 및 외국과의 조약에 관하여 연방내각 또는 다른 주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협정 및 조약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제173조 (기타 임무 및 권한)

- ① 연방의회는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a. 연방의회는 스위스의 대외적 안보, 독립 및 중립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b. 연방의회는 대내적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c. 연방의회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a호 및 제b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법률명령 또는 단순연방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 d. 연방의회는 군사동원령을 명하고, 이를 위하여 군대 또는 군대의 일부를 동원한다.



- e. 연방의회는 연방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f. 연방의회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국민발안에 대한 유효성을 결정한다.
  - g. 연방의회는 국가의 중요한 활동을 계획하는 데 참여한다.
  - h. 연방의회는 개별 법률에 관하여 연방법률과의 정합성을 결정한다.
  - i. 연방의회는 최고연방기관 간의 권한쟁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 k. 연방의회는 사면청원에 대하여 결정하며, 사면을 선언한다.
- ② 연방의회는 기타 연방의 권한에 속하고 다른 연방기관의 소관사항이 아닌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 ③ 법률에 의하여 기타 임무 및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할 수 있다.

### 제3장 연방내각 및 연방행정

#### 제1절 조직 및 절차

##### 제174조 (연방내각)

연방내각은 연방의 최고 통치 및 집행기관이다.

##### 제175조 (구성 및 선거)

- ① 연방내각은 7인의 각료로 구성된다.
- ② 연방내각의 각료는 국민회의의 총선 이후 연방의회에서 선출한다.
- ③ 연방내각의 각료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회의 피선거권이 있는 스위스의 시민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연방내각의 각료의 선출에 있어서는 다양한 지역 및 언어가 적절히 대표되어야 한다.

##### 제176조 (대통령)

- ① 연방대통령은 연방내각의 의장을 겸한다.
- ② 연방의회는 연방내각의 각료 중에서 1년의 임기로 연방내각의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한다.

③ 연방내각의 대통령 및 부통령은 임기 다음 해에는 연임하지 못한다. 퇴임하는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선출되지 못한다.

#### 제177조 (협의제의 원칙 및 행정부처제)

- ① 연방내각은 협의제(*autorité collégiale*) 기구로서 결정한다.
- ② 연방내각 결정의 준비와 집행을 위한 사무는 각 행정부처별로 개별 각료에게 분배한다.
- ③ 연방내각의 결정사항은 각 행정부처 또는 해당 산하 기관에 위임될 수 있고, 결정사항이 위임될 경우에는 법적 구제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78조 (연방행정)

- ① 연방내각은 연방행정을 관장한다. 연방내각은 연방행정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원활한 사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 ② 연방행정은 각 부처별로 분리되고, 연방내각의 각료가 해당 부처를 지휘한다.
- ③ 행정사무는 법률에 의하여 연방내각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법상·사법상의 조직, 단체 또는 사람에게 위임될 수 있다.

#### 제179조 (연방내각사무처)

연방내각사무처는 연방내각의 일반 행정을 담당한다. 연방내각사무처는 연방내각사무처장이 지휘한다.

### 제2절 권한

#### 제180조 (정부정책)

- ① 연방내각은 정부정책의 목적과 수단을 정한다. 연방내각은 국가의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한다.

② 연방내각은 그보다 우월한 공익 또는 사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활동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공개한다.

### 제181조 (발의권)

연방내각은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 제182조 (법률제정 및 시행)

① 연방내각은 헌법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명령의 형식으로 법규범을 제정한다.

② 연방내각은 법제의 집행, 연방의회의 결의안 및 연방사법기관의 판결을 보장한다.

### 제183조 (재정)

① 연방내각은 재정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연방회계를 마련한다.

② 연방내각은 적절한 재정운영을 보장한다.

### 제184조 (대외 관계)

① 연방내각은 연방의회의 참여를 보장하며 대외 관계를 책임진다. 연방내각은 대외적으로 스위스를 대표한다.

② 연방내각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한다. 연방내각은 비준된 조약의 승인을 위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③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방내각은 법률명령을 채택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률명령은 한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 제185조 (대내외 안전보장)

① 연방내각은 스위스의 대외적 안보, 독립 및 중립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② 연방내각은 대내적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③ 연방내각은 공공의 질서나 대외적 안보 또는 대내적 치안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률명령을 채택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법률명령은 한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④ 연방내각은 긴급사태에 있어서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연방내각이 4천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거나 그 병력 동원 기간이 3주를 넘을 경우에는 연방의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 **제186조 (연방과 주의 관계)**

- ① 연방내각은 연방과 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주와 협력한다.
- ② 연방내각은 연방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 법제를 승인한다.
- ③ 연방내각은 주가 다른 주 또는 외국과 체결하려고 하는 협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연방내각은 연방법률, 주헌법 및 주 간의 협정이 준수되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제187조 (기타 사무 및 권한)**

- ① 연방내각은 다음의 사무 및 권한을 가진다.
  - a. 연방행정 및 다른 기관에 위탁된 연방의 사무에 대하여 감독한다.
  - b. 연방의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운영 및 국가의 상황을 보고한다.
  - c.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를 수행한다.
  - d.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절차를 심리한다.
- ② 법률은 연방내각에 기타 사무 및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제4장 연방대법원 및 기타 사법기관**

### 제188조 (연방대법원의 지위)

- ① 연방대법원은 연방의 최고사법기관이다.
- ② 연방대법원의 조직 및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 ③ 연방대법원은 자신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 제189조 (연방대법원의 관할)

- ① 연방대법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위반을 심판한다.
  - a. 연방법률
  - b. 국제법
  - c. 주 간 법률
  - d. 주헌법
  - e. 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주가 공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부여한 보장
  - f. 참정권에 관한 연방과 주의 규정
- ② 연방대법원은 연방, 주 및 주 간의 분쟁을 심판한다.
- ③ 법률은 연방대법원에 다른 사무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연방의회 및 연방내각의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연방대법원에서 심판하지 못한다. 다만, 그 예외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제190조 (준거법)

연방대법원 및 기타 사법기관은 연방법률 및 국제법을 적용해야 한다.

### 제191조 (연방대법원에의 접근성)

- ① 연방대법원에 대한 제소는 법률로 보장한다.
- ② 본질적으로 중요성을 지니는 사법적 사안이 아닌 한, 법률은 소송가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 ③ 법률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대한 제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법률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청구에 대하여 약식절차를 정할 수 있다.

### 제191a조 (연방의 기타 사법기관)

- ① 연방은 형사법원을 설치한다. 형사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방의 사법관할로 정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으로서 심판한다. 형사법원의 기타 권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연방은 연방행정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공법상의 소송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지는 사법기관을 설치한다.
- ③ 연방의 기타 사법기관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제191b조 (주의 사법기관)

- ① 주는 민법·공법상의 소송 및 형사사건의 재판권을 가지는 사법기관을 설치한다.
- ② 주는 공동사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91c조 (사법기관의 독립성)

사법기관은 그 사법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법률에 의해서만 구속된다.

## 제6편 연방헌법 개정 및 경과규정

### 제1장 개정

#### 제192조 (원칙)

- ① 연방헌법은 언제든지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될 수 있다.
- ② 연방헌법 및 연방헌법에 의거한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연방헌법은 법률제정 절차에 의하여 개정된다.

#### 제193조 (전면개정)

- ① 헌법의 전면개정은 국민 또는 양 의회 중 어느 한 의회가 제안하거나 연방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② 국민이 발의하거나 양 의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전면개정의 여부를 결정한다.
- ③ 국민투표에 의하여 전면개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 의회를 새로이 선출한다.
- ④ 국제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4조 (부분개정)**

- ①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은 국민이 제안하거나 연방의회에서 결정한다.
- ②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은 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제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에 관한 국민발안은 그 형식의 통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95조 (발효)**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된 연방헌법은 국민 및 주가 승인하는 즉시 효력을 발한다.

### **제2장 경과규정**

#### **제196조 및 제197조 (생략)**